

환경 정책

1. 환경신기술의 등용문 “환경신기술지정”제도 실시

○ 환경부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지난 8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“환경신기술지정”제도와 “환경기술검증”제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

- 국가로부터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환경기술검증을 받아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음
- “환경신기술지정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가 그간의 연구·개발을 통한 처리성능을 제시하고,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기술을 지정 받으며,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0.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,
- “환경기술검증”은 기술개발자가 개발된 기술을 검증 받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를 제시하고, 환경부지정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시험·분석 등 현장검증을 통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평가해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1.0점의 가점의 혜택을 줌

2. 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(안) 입법예고

○ 제정 이유

- 환경·교통·재해·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절차를 통일하고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이 제정('99.12.31: 법률 제6,095호)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, 평가서작성체제, 주민의견 수렴절차,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,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○ 주요 골자

- 가. 환경·교통·재해 등 분야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·규모 및 평가협의시기를 정하고 공유수면에서 광물·골재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면적 외에 연간 채취량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 결정기준으로 추가하고 난개발로 인한 홍수 등 재해

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대상을 확대함

- 나. 특별시·광역시·도가 조례로 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이 영이 정하는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, 100분의 50미만인 사업이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
- 다. 통합영향평가서는 요약문·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 수렴·교통분야·재해분야·인구분야·환경분야·부록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분야별 세부 작성방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
- 라. 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, 공고·공람,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
- 마. 주민의견 수렴 시 지역주민이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,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,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,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정함
- 바. 영향평가대행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거나 평가대행비용을 구분·명시하도록 함
- 사. 평가서협의기간을 45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
- 아. 영향평가협의완료 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재협의를 해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(수차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)도 재협의 대상으로 함
- 자.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평가서협의기관장이 현지역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절차의 일부 생략 등 약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
- 차. 교통영향재평가 사유를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 또는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각각 3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함